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광진 의원 등 7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4일

3. 제안이유

환경정책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,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가.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확대(안 제3조)

○ 당연직(4명), 위촉직(6명) → 당연직(4명), 위촉직(11명)

○ 위원장 : 행정부지사 →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나. 기타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환경관련 민간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여 환경분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5.1.13.~'15.2.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환경관련

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,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